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1조(목적)

본 실천사항은 한화케미칼주식회사(이하“당사”)의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회사”라 함은 당사의 원자재, 기자재, 외주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회사풀(Pool)”이라 함은 당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한 후 관리, 운용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회사운용”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회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협력회사의 선정기준)

협력회사로 등록되기 위한 최소등록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당사가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면허, 인허가, 특허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당사의 협력회사 등록평가 결과 70점이상을 획득하여야한다.

3. 당사가 지정한 신용인증 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 이상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4조(협력회사의 선정절차 및 결과 공개)

- 당사의 구매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 당사는 등록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산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미선정업체에 대해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명기하여 통지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등록업체와 신규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 제공한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준다.
- 당사의 등록심사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별첨2)

제5조(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회사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협력회사의 등록취소 기준)

협력회사의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당사는 협력회사의 등록취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일시적인 거래보류에 해당된다.

1.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정기평가 결과 2년 연속 이상 70점 미만인 업체
- 정기평가 결과 60점미만인업체
- 고의로 품질, 수량, 납기 등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당사에 손실을 초래한 업체
- 당사의 정당한 개선 요청, 또는 경고서한을 통지 받은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되어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으로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당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영업비밀, 기술 및 생산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업체
- 당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

- 환경, 안전,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

- 당사의 정도경영 원칙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2.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취소 하는 경우

3. 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 로그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등록 해지된 업체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단거래선을 거래선으로 재등록 하고자 할 경우, 구매팀장 이상의 승인 하에 신규협력회사 등록기준에 준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실천사항 위반 임직원에 대한제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고 이의 기준은 당사의 취업규칙, 포상징계 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